

의안번호	2209215
의 퇴 인	여기구의원
회 답 일	2024. 11. 19
추 계 번호	24B4084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공단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00만원, 2030년 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3,600만원(연평균 2,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7	7	7	7	7	36	7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안 제8조)	100	—	—	—	—	100	20
추가재정소요	107	7	7	7	7	136	27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공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u>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u>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u>하고 <u>관련 시책을 수립·시행</u>하여야 함(제2항) <u>지방자치단체</u>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u>농공단지 활성화</u>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농공단지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u>위원회</u>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한 <u>15명 이내의 위원</u>으로 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u>위원장</u>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됨(제3항)	
3	안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 계획)	위원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u>5년 단위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u> (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시·도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	<u>시·도지사</u> 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의견을 수렴하여 <u>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u> (이하 “시·도 활성화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u>시장·군수·구청장</u> 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u> 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u>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u>를 우선적으로 <u>지원</u>하여야 함(제1항)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u>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改替)에 필요한 예산</u>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u>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u>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u>환경부장관</u>은 농공단지의 <u>폐수처리시설(개별 기업의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함) 및 환경보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u>을 <u>지원</u>할 수 있음(제4항)	의무·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지원</u>을 할 수 있음(제1항) 1. 농공단지 입주 상담 및 입지 실사 2. 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성 검토 3. 부실기업의 대체 입주 4.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 제공 5.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및 동향 조사·분석 6. 입주기업체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7.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재량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8	안 제17조(인력 확보 지원)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u>(제1항)	의무·재량규정
		<u>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u>(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u>병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u>	
		<u>보건복지부장관은 노령인구의 농공단지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u>(제4항)	
9	안 제18조(농어민 직업훈련)	<u>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u>(제1항)	의무·재량규정
		<u>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직업훈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u>(제2항)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농어민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u>(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u>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u> 이에 <u>필요한 비용의 일부를</u>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u>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u> 을 융자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에게 <u>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u> 그 근로자의 <u>생계비용과 입주기업체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u>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u>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u> 이에 <u>필요한 지원</u> 을 할 수 있음(제4항)	
11	안 제20조(문화생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u>필요한 시책</u>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u>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공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농공단지에서의 <u>문화·예술·관광 사업</u>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u>필요한 재정적 지원</u> 을 할 수 있음(제3항)	
12	안 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관할구역 내 <u>농공단지의 활성화</u> 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u>전담기구</u> 로서 시·도지사는 <u>광역농공단지협의회</u> (이하 “ <u>광역단위협의회</u> ”라 함)를, 시장·군수·구청장은 <u>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농공단지협의회</u> (이하 “ <u>기초단위협의회</u> ”라 한다)를 <u>각각 구성·운영</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광역단위협의회 및 기초단위협의회회의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u>한국농공단지연합회</u> (이하 “ <u>연합회</u> ”라 한다)를 <u>구성·운영</u> 할 수 있음(제2항)	
		<u>협의회 및 연합회</u> 는 <u>다음 각 호의 업무</u> 를 수행할 수 있음(제5항) 1.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농공단지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 지원 3.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 정책 건의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u>필요한 비용</u> 을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3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74조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u> 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u> 이나 <u>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제11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음</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 예산 확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농공단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	• 유사사례 참고
4	안 제9조(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	• 미대상 －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및 시군구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하거나 기존 용역예산으로 수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6	안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농공단지 입주 지원, 외국인·노령인구를 포함한 인력확보 지원, 농어민직업훈련 지원,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주거안정용 장기저금리 정착자금 융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유지비용 지원,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및 광역·시·군·구농공단지협의회 비용 지원, 타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한 지원사업 운용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7	안 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8	안 제17조(인력확보 지원)		
9	안 제18조(농어민직업훈련)		
10	안 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20조(문화생활 지원)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업의 구체적 계획 및 지원 계획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13	안 제23조(다른 특별 회계 등을 통한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 산업시설과 교육 등 관련시설 및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를 지칭¹⁾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農工團地)로 구분

[표 2] 산업단지의 종류

종류	용도
국가산업단지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지역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농공단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정리

<https://www.kicox.or.kr/home/mwrc/mwrcSigtc/entrprsFctry_site/entrprsFctry_site1.jsp>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15개소이며, 이 중 농공단지 수는 483개소임

※ [참고자료] 지역별·유형별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현황 참고

[표 3]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및 입주·고용 현황: 2024년 2분기

단지유형	유형별 산업단지 수 (개소)	입주계약 업체(개사)	가동업체 (개사)	남 (명)	여 (명)	고용 (합계)
국가	51	66,124	60,661	880,320	206,682	1,087,002
일반	735	49,468	45,847	824,345	263,302	1,087,647
도시첨단	46	3,158	2,645	17,715	7,579	25,294
농공	483	8,280	7,576	112,514	41,621	154,135
총합	1,315	127,030	116,729	1,834,894	519,184	2,354,07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공표(24.2분기), 2024.9.13.

<https://www.kicox.or.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6&q_bbscttSn=20240913151440599&q_order=&q_clCode=2>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공단지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농공단지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4130-445)								
-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 교통·안전,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2,825	2,823	2,625	2,625	-		-
-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노후 농공단지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	1,543	1,472	3,600	(삭감중)	-
합계		2,825	2,823	4,168	4,097	3,600	(삭감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²⁾ 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2) 안 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체 및 전국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위원 수) 15명 이내
- (위원장) 1명 (국무총리)
- (당연직) 6명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간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위촉직) 6명
 - －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체 및 전국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따라서 제정안의 위원 구성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6명(위촉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회의개최 횟수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회의개최 현황을 참고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21~2023년

(단위: 회)

유사 위원회	구성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2004.12.	3	3	2	8	2.7
농지관리위원회	2022. 5.	(미구성)	6	9	15	7.5

주: 회의 횟수는 본회의 및 분과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년 9월)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 추계결과, 농공단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농공단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6	6	6	6	6	—
회의개최 횟수(B)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합계 (D=A×B×C)	7	7	7	7	7	36

자료: 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년 9월)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안 제8조)

- 농공단지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비용은 각 부처의 산업·농공단지 등 유사 연구용역 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참고하여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7]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공고기관	과제명	공고예산	공고일	비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연구	450 (1차 140백만원, 2차 140백만원, 3차 170백만원)	2023. 08. 29	전체 30개월 (1차 12개월, 2차 9개월, 3차 9개월)
국토교통부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60	2024. 08. 23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70	2021. 07. 19	
한국농어촌공사	농공단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용역	20	2023. 07. 13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농공단지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재공고)	100	2019. 08. 27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신산업 창출과 제조혁신 활성화 방안 용역	100	2019. 09. 19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 추계결과, 농공단지위원회가 5년마다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 1억원으로 추계됨

[표 8]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00	—	—	—	—	100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지역별·유형별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지역별·유형별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현황

(2024년 6월 기준)

지역별	유형별 산업단지 수 (개소)					지정면적 (천㎡)	관리면적 (천㎡)	업체 수 (개소)		고용인원* (명)
	국가	일반	도시 첨단	농공	소계			입주업체	가동업체	
서울	1	3	—	—	4	3,285	3,285	15,295	13,902	180,900
경기	5	177	13	1	196	252,323	136,851	37,079	35,142	590,318
인천	2	14	2	—	18	22,929	22,911	14,170	13,576	151,639
대전	1	3	2	—	6	53,269	53,270	2,810	2,637	47,077
대구	1	16	3	4	24	45,022	42,940	10,076	9,877	115,767
부산	1	32	5	1	39	47,693	47,558	9,456	8,830	128,512
광주	2	9	2	1	14	32,641	26,285	5,154	4,252	67,240
울산	2	25	1	4	32	92,353	83,166	2,381	1,733	135,775
세종	1	13	1	4	19	13,169	13,166	196	175	12,604
강원	1	25	6	49	81	26,645	24,140	2,094	1,867	31,959
충북	3	91	3	44	141	95,287	89,101	3,215	2,808	124,586
충남	6	75	3	94	178	127,385	122,493	3,178	2,817	151,143
경북	7	79	1	67	154	139,314	127,070	6,205	5,288	168,802
경남	9	118	2	81	210	140,191	126,905	7,547	6,866	273,543
전북	6	23	1	60	90	133,490	89,162	3,946	3,524	83,144
전남	5	31	1	70	107	227,363	128,522	3,942	3,153	86,746
제주	2	1	—	3	6	2,457	2,456	286	282	4,323
합계	51**	735	46	483	1,315	1,454,816	1,139,281	127,030	116,729	2,354,078

주: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조사에서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모두)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음

** 두 개의 시·도에 걸친 산업단지(한국수출, 빛그린, 아산, 명지녹산)는 충북 집계되어 지역별 합계가 55개소가 아닌 총 51개소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